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88 발의연월일: 2025. 1. 21.

발 의 자:한민수·이학영·박민규

소병훈 · 김문수 · 박성준

임오경 · 이건태 · 박용갑

이연희 • 박홍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요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음.

지속적인 여론조사 제도개선과 선거문화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고,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 동원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화,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신청 기간 제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로

1천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홈페이지 공개, 선거여론조사 신고면제 범위 축소를 통해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을 방지하고 선거 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의9제1항 등).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8제7항제2호 중 "여론조사가"를 "여론조사 및 선거여론조사기 관(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제8조의9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여론조사 기관·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제8조의9제1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요건 및 같은 조제5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취소사유 등에 대한 확인 및 조치 제8조의9제1항 중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을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 1.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전문인력 3명 이상을 포

함한 5명 이상의 상근 직원. 이 경우 같은 사람을 법 제8조의9제3항에 따른 2이상의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분석전문인력으로 등록할수 없으며, 상근직원은 등록 신청을 하는 때에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 가. 여론조사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여론조사 기관·단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결과분석 등 여론조사와 직 접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나.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여론조사 기관·단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결과분석 등 여론조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다. 여론조사 기관·단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결과분석 등 여론 조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제8조의9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매년 제5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취소사유 및 이 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확인·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9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반 행위로 1천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그 사실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8조제3항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신청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9제5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등 록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
회) ① ~ ⑥ (생 략)	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⑦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선거에 관한 <u>여론조사가</u> 이	2 <u>여론조사 및 선</u>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거여론조사기관(선거여론조사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	심의위원회가 제8조의9제2항
의 및 조치	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여
	론조사 기관・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3. 제8조의9에 따른 선거여론조	3. 제8조의9제1항에 따른 선거
사기관 등록 등 처리	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요건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취소사유 등에 대한 확
	인 및 조치
⑧ ~ ⑭ (생 략)	⑧ ~ ⑭ (현행과 같음)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① 여론조사 기관・	등록 등) ①
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	
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u>조사시스템,</u>	<u>다음 각 호의</u>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	요건을 모두 갖추어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 1.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 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전문인력 3명이상을 포함한 5명이상의 상근 직원. 이 경우 같은 사람을 법제8조의9제3항에 따른 2이상의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분석전문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상근직원은 등록 신청을 하는 때에 3개월 이상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 가. 여론조사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여론조사 기관·단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결과 분석 등 여론조사와 직접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수행한 사람
 - 나.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여론조사 기관· 단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

- ② ~ ④ (생 략)
- ⑤ 선거여론조사기관(그 대표 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임의위원회는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한다.이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그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없다.

1. ~ 3. (생 략) <신 설>

• 결과분석 등 여론조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다. 여론조사 기관 · 단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 · 결과분 석 등 여론조사와 직접 관 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 <u>행한</u> 사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호에 해당하여 등 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 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 년 이내, 제3호에 해당하여 등 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 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 년-----1. ~ 3. (현행과 같음) ⑥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매년 제5항에 따른 선거여론조

사기관의 등록 취소사유 및 이

<신 설>

⑥ (생략)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 저 지 등)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 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

	법	위반여부에 대히	- od	확인	•
	<u>조</u>	치를 시행하여야	한디	<u> </u>	
	7	선거여론조사심	의유	위원회	늰
	<u>선</u>	거여론조사기관이	선	거에	관
	<u>한</u>	여론조사와 관련	된	위반	행
	위:	로 1천만 원 이상	l의	과태	료
		부과받은 경우			
		앙선거여론조사4			
	홈:	페이지에 공개하여	야	한다	,
		(현행 제6항과 같			-
1	108	8조(여론조사의	결고	가공표	.금
	지	등) ①・② (현행	과	같음)	
	(3)				
	1	 ~ 3 (혀행과 같	ر ح		
) (YYH 45	— ·		

<삭 제>

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 · 6. (생략)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④ ~ ⑭ (생략)

5.·6.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 ⑭ (현행과 같음)